

2022년 장기요양 서비스 모니터링 다빈도 예상 Q&A

2022. 3

h·well
국민건강보험



1. 공통사항

COVID-19

공통사항

1

코로나-19 관련 한시적 장기요양 급여비용 산정지침이 서비스 모니터링 점검 시에도 동일하게 적용되나요?

- 네, 그렇습니다. 코로나-19 관련 한시적 지침에서 적용하는 기준을 서비스 모니터링 점검 시에도 동일하게 적용합니다.

공통사항

2

모니터링으로 장기요양 기관을 방문하는 날짜를 사전에 안내하나요?

- 네, 그렇습니다. 서비스 모니터링 대상으로 선정된 기관을 방문 전일 또는 당일 아침에 해당 기관에 유선으로 방문안내 합니다.

공통사항

3

점검당일 대표자, 시설장(관리책임자)가 참석할 수 없다면 어떻게 하나요?

- 대표자, 시설장(관리책임자)을 대신하여 해당업무를 위임받아 수행할 종사자를 대상으로 위임장을 작성하고 해당 종사자가 참석하도록 합니다.

공통사항

4

수급자(또는 보호자)의 기관이용 만족도 유선점검은 언제 실시하나요?

- 모니터단이 '서비스 모니터링 실시 예정 통보서'를 해당기관에 발송한 후 점검 실시를 위한 대상기관 방문 전 실시합니다.
※ '서비스 모니터링 실시 예정 통보서'가 도달한 이후에 점검 대상에서 제외될 수 있음

공통사항

5

노인장기요양보험법, 장기요양 급여제공기준 및 급여비용 산정방법 등에 관한 고시·세부사항에 없는 서식은 어떻게 작성하나요?

- 법적으로 지정되지 않은 기록지 등은 정해진 형식이 없습니다. 서비스 모니터링 에서 점검하는 모든 내용을 포함한 서식이라면 무방합니다.

6 장기요양기관이 자가진단 시스템에 꼭 참여해야 하나요?

- 전전월에 급여비용 '가산' 결정을 받은 경우, 자가진단 참여 대상입니다. 전년도에 자가진단에 참여하지 않은 기관은 서비스 모니터링 우선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. 자가진단을 참여함으로써 서비스 모니터링 지표에 대한 이해를 높이고, 서비스 질 향상에 도움이 되므로 매월 자가진단을 실시하시기 바랍니다.
- 모니터링 실시 월 자가진단 실시에 대한 결과와 모니터링 결과 점수를 비교하여 매뉴얼 마지막 지표*에서 점검하고 있습니다.
* (선별) 자가진단과 현장 모니터링 결과가 일치하는가? (배점 5점)

7 자가진단을 실시하였는데 실수로 입력을 잘못된 상태에서 최종점검이 되었습니다. 수정을 할 수 있나요?

- 수정을 할 수 없습니다. 최종 점검을 하고 저장을 하면 공단으로 자료가 전송되고 전송이 된 이후에는 수정이 불가능하므로 최종 점검을 체크, 저장하기 전에 한번 더 확인을 하시기 바랍니다.

8 자가진단을 하려면 2022년 서비스 모니터링 매뉴얼은 어디에서 확인할 수 있나요?

- 알림-자료실 >알림방 >공지사항 >게시번호 60785에 게시되어 있습니다.

9 서비스 모니터링 및 자가진단을 당월이 아닌 전전월에 대하여 실시하는 이유가 무엇입니까?

- 기관에서 급여제공 후 급여비용 청구는 그 다음 달부터 이루어지고 있으며 청구내역을 심사한 후 급여비용을 지급하면 최소 1개월이 소요되므로 전전월을 기준으로 서비스 모니터링 및 자가진단을 실시하고 있습니다.

10 자가진단항목을 모두 입력하니 결과완료 Y가 보여 집니다. 이렇게 하면 자가진단 절차가 모두 끝난 것인가요?

- 아닙니다. 결과완료 Y가 보여 지면 마지막으로 반드시 최종점검 에 체크를 하고 저장을 해야 공단에 전송이 되고 자가진단에 참여한 것으로 인정이 됩니다.

11 자가진단을 실시하려고 하는데 대상기관이 아니라고 뜹니다. 왜 그런가요?

- 자가진단은 실시 월의 전전월 수가가산 결정 값이 '가산'인 기관이 대상이 됩니다. 해당 월 가산 결정을 받지 않은 기관은 대상이 아닙니다.

(예) 2022년 4월중에 자가진단을 실시할 경우, 2022년 2월분 급여비용 결정 값이 '가산' 을 받은 기관만 대상이 됨. 2월에 결정 값이 '정상', '가산·감산' 또는 '감산'인 기관은 자가진단 대상이 아님

12 자가진단을 실시할 때 전전월 기준으로 한다고 하는데, 무엇이 전전월 기준인가요?

- 자가진단 시스템에 입력할 때 인력현황과 모든 지표는 전전월을 기준으로 입력해야 합니다. 작성월 기준이 아님을 유의하시기 바랍니다.

13 자가진단을 실시하였는데 결과가 'N'으로 보이면서 점수가 보이지 않는 이유는 무엇인가요?

- 모든 지표항목을 점검하여야 하며, 한 문항이라도 누락된 경우 결과가 'N'으로 표시됩니다.

2. 인력추가배치 지표 i. 시설급여기관, 단기보호기관

인력추가배치 지표 i (시설, 단기보호)

14

지표1-③] 적용방법 2. 판단척도③「보통」의 '나. 간호사를 배치하였으나 간호사배치 가산을 적용받지 않음'은 어떤 경우를 의미하나요?

- 간호사의 월 기준 근무시간 미충족으로 가산이 적용되지 않는 경우, 겸직으로 가산이 적용되지 않는 경우 등이 해당됩니다.

※ 인력추가배치 ii. 주·야간보호 [지표1-③] 동일 적용

2. 인력추가배치 지표 ii. 주·야간보호기관

인력추가배치 지표(ii. 주·야간보호기관)

15

[지표5-③] 응급상황을 대비하여 보호자 전화번호를 운전자(보조인력)의 휴대전화에 저장하는 것도 인정하나요?

- 네, 그렇습니다. 수급자 보호자의 연락처 등을 휴대전화에 저장하여 응급상황 연락체계를 갖추는 것도 인정합니다.
- 다만, 만약의 상황을 대비하여 장기요양기관의 담당자 및 최종 책임자의 사무실 전화번호는 이동차량에 비치합니다.

인력추가배치 지표(ii. 주·야간보호기관)

16

[지표5-①] 운전자 이외의 보조인력 동승 항목에서 운전자와 보조인력이 각각 기관종사자인 경우에만 인정하나요?

- 아닙니다. 운전자와 보조인력 두명이 탑승해야 하며 그 중 한명만 기관 종사자인 경우에도 보조인력 동승으로 인정하고 우수로 판단합니다.

3. 맞춤형 서비스 제공가산 지표

맞춤형 서비스 제공가산 지표

17

[지표 2-①] 한 주에 맞춤형 프로그램이 1회만 제공된 경우 판단척도는 어떻게 적용하나요?

- 특정 주(월~금)에 맞춤형 프로그램이 1회만 제공된 경우, 해당 주는 기준을 충족한 것으로 판단하여 '우수'로 적용합니다.
- 다만, 한 주에 2회 이상의 맞춤형 프로그램이 제공된 경우는 반드시 2종류 이상의 프로그램이 제공되어야 합니다.

4. 방문요양 사회복지사 등 배치가산 지표

방문요양 사회복지사 등 배치가산지표

18

[지표2] 팀장급 요양보호사의 자격기준은 요양보호사로 근무한 기간만 적용되나요?

- 네, 그렇습니다. 팀장급 요양보호사는 장기요양기관에서 요양보호사로 월 60시간 이상 서비스를 실시한 기간이 5년(60개월) 이상인 경우 가능합니다.
- 팀장급 요양보호사를 채용하고자 하는 경우, 장기요양기관의 대표자는 해당 요양보호사가 여러 기관에서 근무한 경우, 각 기관별 근무 개월 수 및 월별 근무시간이 기재된 경력증명서 등으로 팀장급 요양보호사의 자격기준 충족 여부를 반드시 확인하여야 합니다.

COVID-19

방문요양 사회복지사 등 배치가산지표

19

[지표4] 코로나-19, 관련 한시적 산정지침에 따라 방문요양 사회복지사 등의 방문상담을 유선으로 대체한 경우에도 인정되나요?

- 네, 그렇습니다. 수급자 또는 사회복지사 확진·격리 시 급여성공시시간 중 월 2회 유선상담(수급자, 종사자)을 실시한 경우 인정합니다.
* 코로나19 한시적 지침 11~12차 적용 기간이며, 추후 변경될 수 있음

방문요양 사회복지사 등 배치가산지표

20

[지표4] 수급자가 월 중 하루라도 야간·심야가 아닌 시간대에 급여를 이용하면 사회복지사 등이 반드시 급여제공시간에 방문해야 하나요?

- 네, 그렇습니다. 월 중 단 하루라도 야간·심야가 아닌 시간대에 급여를 이용하면 사회복지사 등은 급여제공시간에 업무를 수행해야 합니다.
- 또한, 야간·심야가 아닌 시간에 급여제공을 시작하거나 종결하는 경우(예시: 급여제공시간 17:30~20:00)에도 사회복지사 등은 급여제공시간 중에 수급자의 가정을 방문해야 합니다.

COVID-19

방문요양 사회복지사 등 배치가산지표

21

[지표6] 방문상담 소요시간을 20분 이상 면담을 하여야만 '우수'로 적용되나요?

- 아닙니다. 면담 시간이 20분 이상인 경우를 '우수'로 판단하나, 코로나 19 상황에서는 지침에 따라 유선상담, 방문상담 모두 상담 소요시간을 보지 않고 '우수'로 적용합니다. 기한은 코로나-19 한시적 산정지침을 적용하는 기간 동안 유지합니다.

COVID-19

방문요양 사회복지사 등 배치가산지표

22

[지표7] 코로나-19 관련 한시적 지침에 따라 유선상담을 실시한 경우 수급자(보호자) 서명은 생략 가능한가요?

- 네, 그렇습니다. 유선상담 시에는 세부사항 별지 제24호 서식의 수급자(보호자) 서명은 생략 가능합니다.

COVID-19

방문요양 사회복지사 등 배치가산지표

23

코로나19 산정지침을 반영하여 방문요양 사회복지사 배치가산 인정 특례 적용으로 유선 상담(월2회)시에도 제공시간 중에 상담을 해야 하나요?

- 네, 그렇습니다. 급여제공시간 중에 상담이 이루어진 경우에만 인정합니다.